

‘20년 시화·화옹지구 관리·처분계획(임시사용) 공고

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방조제공사 완료 후 노출된 토지에 대해서 「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」 제6조에 따라 시화·화옹지구 임시사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1. 관리·처분 대상면적

지 구	공 구	임시사용 계획 면적 (㎡)	행정구역 (토지소재지)	비 고
계	5	11,893,905		
시화지구	소계	4,965,000		
	3공구	2,302,000	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일원	전년과 동일
	4공구	232,000	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일원	"
	5공구	1,556,000	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일원	"
	6공구	875,000	화성시 송산면 고포리 일원	"
화옹지구	6공구	6,928,905	화성시 우정읍 주곡리 일원	"

2. 관리·처분 방법 : 임시사용(1년)

3. 관리·처분 대상자 결정방법 등

-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 및 「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」 제8조에 따라 결정.
※ 관련규정에 따른 사업지구내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.

4. 관리·처분 일정

- 매립지등 관리·처분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('20.3.~), 임시사용 신청공고('20.3.11~3.19),
임시사용 신청 및 선정('20.3.16~3.20), 계약체결('20.3.25~3.31)
※ 상기 일정은 업무추진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5. 기타사항

- 매립지등 관리·처분계획에 대한 위치, 면적, 도면은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(유지관리부)에서 열람 가능합니다.
- 임시사용 신청 및 계약관련 사항은 별도 공고 계획입니다.
- 매립지등 관리·처분심의위원회 운영은 신규면적, 분쟁 및 민원, 계약위반사항 등 심의안건 발생시 구성·운영
-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촌정비법,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에 따릅니다.
- 기타 사항은 우리공사 화안사업단 유지관리부(031-412-1436 조종현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위와 같이 공고함.

2020년 03월 03일



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장

